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1561
번 호	

제출일자 : 2018. 7.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시행('17. 7. 26.)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쉬운 한자어로 정비하며, 군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명칭 반영 (안 제2조 ~제8조)
-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9조 ~제14조)
- 다. 조직 개편에 의해 변경된 부서 명칭 반영(안 제15조 ~ 안 제24조)
- 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정비 (안 제25조 ~ 안 제57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2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해당 조례안은 단순한 명칭, 자구 변경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함.
 - (나) 예고결과 :
-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중앙 부처 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조직 개편에 따른 중앙부처명칭 및 달성군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주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조례를 일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부처 명칭의 정비

제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건설교통부의”를 삭제한다.

제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 중 “농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장 일본식 한자어의 정비

제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납골당” 을 “봉안당” 으로 한다.

제1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득한” 을 “알게 된” 으로 한다.

제1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참” 을 “지각” 으로 한다.

제1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하며” 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로 한다.

제1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득한” 을 “알게 된” 으로 한다.

제1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의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4조제4항 중 “부락”을 “마을”로 한다.
- ② 제19조제1항제1호 중 “계기”를 “규정”으로 한다.

제4장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의 정비

제1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1조 및 제2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각각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 ② 별표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을 “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2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책관광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2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2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 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환경국장

제2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2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5장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정비

제2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한다.

제2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제2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로 한다.

제2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9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을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으로 한다.
- ② 제10조제1항제6호 중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제2호”로 한다.

제3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를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조제6호 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 ② 제3장의 제목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 ③ 제8조의 제목 중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한다.
- ④ 제8조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 민원실을”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로,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제8조제2항 중 “사이버민원실은” 을 “전자민원창구는” 으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 를 “「민원 처리에 관한법률」 제12조” 로 한다.

⑥ 제9조제2항 중 “사이버 민원실” 을 “전자민원창구” 로 한다.

제3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로 한다.

제3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51조” 를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로 하고, 제27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을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으로 한다.

제3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로 한다.

제3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물보호법」 제7조제2항제3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 (학대행위금지)” 를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제3호 (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학대행위금지)” 로 한다.

제3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가목” 을 “법 제3조제2호” 로 한다.

제3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로 하고, 제2조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 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로 한다.

제3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로 한다.

②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제2조제2호 중 “법 제3조제2호 가목”을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3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4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로 한다.

제4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 제1조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제2조제2호 중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4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를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4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4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를 “「장애인복지법」 제13조”로 한다.

제4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하고, 제7조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로 한다.

제4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48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2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으로 한다.
- ② 제4조제1항제1호바목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4조제1항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49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한다.

제50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91조”로 한다.

제51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조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로 한다.

②제5조제4항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③제7조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로 한다.

제53조(「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을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54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한다.

제55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로 한다.

제56조(「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3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②제11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57조(「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
목”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하고, 제2
조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u>행정자치부장관</u> 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③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u>행정자치부장관</u> 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② ----- -- <u>행정안전부장관</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생략) 2.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2.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 ⑤ (생략) 2. 전통시장 또는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개설등록및변경등록) ⑤ (현행과 같음) 2.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u>중소기업청장</u> 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 <u>중소벤처기업부장관</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정의) 2.(생략) 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u>행정자치부장관</u>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제3조(정의) 2.(현행과 같음) 다.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국민속소싸움경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동물보호법</u> 」 제7조제2항제3호(동물학대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학대행위금지)에 규정된 민속경기 등 <u>농림수산물부령</u> 으로 정하는 예외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주최)하는 민속소싸움경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규정하고, 소싸움경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생명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동물보호법</u> 」 제8조제2항제3호(동물학대 등의 금지)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학대행위의 금지)----- <u>농림축산식품부령</u>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2. 영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u>건설교통부장관의</u> 위임수수료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 2.----- <u><삭제></u>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의 농지개령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도 별도 <u>농림수산부장관</u> 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 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②-----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제4조(감독기관) ③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때에는 <u>농림수산부장관</u> 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제4조(감독기관) ③----- ----- -----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생략) 1.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 으로 관리청을 <u>농수산부</u> 로 표시한다	제5조(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현행과 같음) 1.----- ----- <u>농림축산식품부</u> ----- -----
제6조(개량계의 조직) ②(생략) 1.규약(<u>농림수산부장관</u> 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	제6조(개량계의 조직) ②(현행과 같음) 1.--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4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u>건설교통부장관</u> 이 정하는 국민주택 기금운영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융자조건) ①----- ----- ----- <u>국토교통부장관</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에 의하여 분뇨, 하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u>납골당</u> 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 과 같다.	제3조(장려수당) ----- ----- ----- 봉안당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복무) ②리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u>지득한</u>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복무) ②----- ----- ----- 알게 된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u>지참</u>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u>지각</u>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u>회의를 통리하며</u>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4조(임무)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u>지득한</u>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임무) ② ----- <u>알게된</u>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④전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 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봉리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 <u>부락</u>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구성) ④----- ----- ----- ----- ----- ----- <u>마을</u> ----- -----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① (생략) 1.법 제44조제7항의 각호에 <u>계기</u> 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제19조(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① (현행과 같음) 1.----- <u>규정</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u>의회사무과장</u> , 읍·면장에게 위임하므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의회사무과장</u> ,----- ----- ----- -----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사무중 의회사무과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과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확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의회사무국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사무직원중 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임용권 나. 호봉확정 및 승급 다.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자치법 제91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법 제7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 같은법 제32조
	2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군의 <u>기획감사실</u> 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제9조(이사) ① ----- ----- ----- <u>기획예산실장</u>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행정지원국장</u>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구성) ②----- ----- ----- <u>자치행정국장</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발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6조(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감사실장</u> 이 된다	제6조(구성) ②----- ----- <u>기획예산실장</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1조(구성) ③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u>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u> 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면별 1명 이내로 한다.	제11조(구성) ③----- <u>부군수,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책관광국장, 기획예산실장</u>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3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u>정책관광국장</u> , 법무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구성) ③ ----- <u>경제환경국장</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u>행정지원국장</u> 으로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구성) ③ ----- <u>자치행정국장</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③(생략) 1. <u>주민복지국장</u>	제13조(위원회 설치 등) ③(현행과 같음) 1. <u>경제환경국장</u>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조직) ③당연직 위원은 공원업무담당국장 및 <u>기획감사실장</u> ,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2조(조직) ③----- ----- <u>기획예산실장</u>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5조(운영위원회)③(생략) 1. 달성군 정책관광국장, <u>기획감사실장</u> , 문화체육과장	제5조(운영위원회)③(현행과 같음) 1. ----- <u>기획예산실장</u>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생략)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제16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2조(공가)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제22조(공가) 5. -----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생략) 1. <u>지방자치법 제82조</u> 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생략) 1. <u>「지방자치법」 제90조</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1. <u>「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u> 에 따른 군 방위협의회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1. <u>「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u> ----- -----
제10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생략) 6. <u>「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u> 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제10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6. <u>「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7조제2호</u>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 (정의) ①(생략) 3. " 자동차세연납자 " 라 함은 <u>「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u>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정의) ①(현행과 같음) 3. ----- <u>「지방세법」 제128조제3항</u>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4. 인터넷 민원 이라 함은 「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u> 」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라 함은 「 <u>공공기관의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제2조(정의) 4.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 ----- ----- ----- 6. ----- 「 <u>개인정보 보호법</u> 」 제2조 제1호----- -----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u>사이버 민원실</u> 운영	제 3 장 홈페이지를 통한 <u>전자민원창구</u> 운영
제8조(<u>사이버 민원실</u> 설치·운영) ①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u> 」 제2조제5항에 의한 <u>사이버 민원실</u> 을 설치하여야 하며, <u>사이버 민원실</u> 에 접수한 민원은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② <u>사이버 민원실</u> 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u>전자민원창구</u> ----) ①-----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제11조에 의한 <u>전자민원창구</u> 를----- ----- <u>전자민원창구</u> ----- -----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 ----- ② <u>전자민원창구</u> 는----- ----- ----- 「 <u>민원처리에 관한 법률</u> 」 제12조----- ----- -----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② <u>사이버 민원실</u> 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② <u>전자민원창구</u>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생략)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제13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내지 제51조----- ----- ----- -----
제27조(채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채납처분) ----- ----- ----- -----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 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22조(과오납금의 환급) ② ----- -----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1.“농업”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2.-----법 제3조제2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친환경농업육성법</u> 」 제3조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외에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 제3조----- ----- -----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 <u>친환경농업육성법</u> 」 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 (적용범위) ----- ----- 「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4조 및 「 <u>내수면어업법</u> 」 제17조에 따라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인의 소득, 삶의 질 및 농업과 내수면어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4조----- ----- ----- ----- ----- ----- ----- -----
제2조(정의) 1. “농업”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 2. ----- 법 제3조제2호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 <u>폐기물관리법</u> 」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 <u>폐기물관리법</u> 」 제2조제8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1조(목적) 이 조례는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 」 제1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이하“휴양림”이라 한다)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위탁관리,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조(목적) ----- 「 <u>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u> 」 제21조의5-----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제4조 및 「 <u>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제4조 및 「 <u>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3조----- ----- ----- -----
제2조(정의) 2.“청소년대상 성범죄”라 함은 「 <u>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조(정의) 2. ----- 「 <u>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u> 」 제2조 제2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2. “가족”, “가정”, “건강가정” 및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 -----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장애인복지법</u> 」 제1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장애인복지법</u> 」 제13조-----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 <u>장애인복지법</u> 」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달성군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장애인복지법</u> 」 제59조----- ----- ----- -----
제7조 (운영)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u>사회복지사업법</u> 」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⑤----- ----- ----- ----- ----- 「 <u>사회복지사업법</u> 시행규칙」 제21조의2----- ----- ----- -----

현행조례	개정안
제3조(주차요금) ③(생략)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58조제9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제3조(주차요금) ③(현행과 같음) 4. ----- -----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58조제11항 ----- ----- -----
제7조(하역주차구간)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u>도로교통법</u>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하역주차구간) ② ----- ----- <u>도로교통법</u> 제2조제22호 ----- ----- ----- -----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④ -- ----- ----- ----- ----- ----- ----- ----- ----- ----- ----- -----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u>조제3항 후단</u> 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u>후단</u> ----- -----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생략) 1.(생략) 바. 「 <u>사립학교법</u> 」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바. 「 <u>사립학교법</u> 」 제2조제2호 -----
5. 「 <u>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u> 」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농어촌정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농어촌정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 ----- ----- -----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 (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로법」 제91조 ----- ----- ----- -----

현행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u>지진재해대책법</u> 」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지진·화산재해대책법</u> 」 제21조 ----- ----- -----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④ (생략) 1. 「 <u>건설기술관리법</u> 」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 ④ (현행과 같음) 1. 「 <u>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u> 」 제4조----- -----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② 달성군지역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 <u>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u> 」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② ----- ----- ----- 「 <u>실내공기질 관리법</u> 」 제3조제1항-----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대구광역시 달성군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득증대와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역보건법</u> 」 제7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보건법</u> 」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11조(위촉절차) ① (생략)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 제9조의5제1항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u> 에 정한 자격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11조(위촉절차) ① (현행과 같음) 3.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제1호</u> ----- ----- ----- ② ----- ----- ----- ----- <u>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제1항</u> ----- -----
제13조(해촉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u> 」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해촉 절차) ----- ----- ----- ----- <u>「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u> ----- ----- -----

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 ----- ----- -----
--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 행 조 례	개 정 안
제2조(정의) 1. “농업인”이란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산물 생산기능 외에 「 <u>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말한다.	제2조(정의) 1.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2호----- ----- 6. ----- ----- 「 <u>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u> 」 제3조제9호----- -----

□ **정부조직법**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장관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대통령경호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경호처
국민안전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소방청 또는 해양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자치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중소기업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금융위원회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총리령 또는 부령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소관사무	대통령경호처장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4조제7항에 규정된 사무	소방청장
국민안전처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	해양경찰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의 소관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및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찰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법률 제1284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승계한 사무를 말한다)	해양경찰청장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7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	중소벤처기업부장관